

# 검 토 보 고 서

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30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」은 '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계획중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」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예탁하여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

-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15억 5,000만원에서 19억 2,231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24%인 3억 7,231만원 증가함

〈표 2-1〉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구분	당초	변경	증감	구분	당초	변경	증감
계	2,000	2,002	2	계	2,000	2,002	2
교특회계 전입금	1,000	1,000	-	비용자성 사업비 (교수-학습 활동지원)	450	80	△370
이자수입	-	2	2	기본경비	-	-	-
예치금 회수	1,000	1,000	-	예비비및기타 (예치금)	1,550	1,922	372

■ 수입계획 변경

- 이자수입 2,317천원 증가: (당초) 0원→(변경) 2,317천원  
※2020년 12월 말 예금이자 변동액 및 2021년 6월 예금이자 반영

■ 지출계획 변경

-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 3억 7000만원 사업비 감액 : (당초) 4억 5,000만원→(변경) 8,000만원
-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 3억 7,231만원 예치금 증가 : (당초) 15억 5,000만원→(변경) 19억 2,231만원

### Ⅲ. 검토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(4억5,000만원)보다 △82.2%, △3억 7,000만원 감액하고, ②**예비비 및 기타**의 지출계획을 당초 계획(15억 5,000만원)보

다 24%, 3억 7,2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지출계획 세부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사업내역	당	초	변	경	증	감	증	감	률
합 계		2,000		2,002		2			0.1
교 수 - 학 습 활 동 지 원		450		80		△370			△82.2
학 생 생 활 지 도		450		80		△370			△82.2
학 생 생 활 지 도 지 원		450		80		△370			△82.2
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		450		80		△370			△82.2
예 비 비 및 기 타		1,550		1,922		372			24.0
예 비 비 및 기 타		1,550		1,922		372			24.0
예 치 금		1,550		1,922		372			24.0
예 치 금		1,550		1,922		372			24.0

- 아울러 수입계획의 경우에는 이자수입 항목중 '20년 12월 말 예금이자 변동액과 '21년 6월, 예금이자 200만원을 수입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하였음

○ 「지방기금법」 과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1)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1) 행정안전부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1. 7), p.294

- 당초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정책사업은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, ②**예비비 및 기타**로 기재하여 제출되어야 함에도, 제출된 안건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하위 세출과목을 혼재하여 작성함으로써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상 해당 안건이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특히,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사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개선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